

어린이기호식품 광고 (소위 미끼상품) 제한 가이드라인

I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

◎ 법적근거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제1항

제10조(광고의 제한·금지 등) ①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는 방송,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*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“어린이”의 정의

학교의 학생 (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)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(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)

◎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 및 범위

어린이가 선호하고 다 빈도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

범위	가공식품	조리식품
범위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1항 및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·규격이 고시된 식품	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8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
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자류 중 과자(한과류 제외), 캔디류, 빙과류 - 빵류, 초콜릿류 -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, 발효유류(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) -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- 면류(용기면만) 중 유탕면 및 국수 - 음료류 중 과·채주스,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유산균음료, 혼합음료 -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, 햄버거, 샌드위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과·제빵류 - 아이스크림류 - 햄버거, 피자 -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, 떡볶이, 꼬치류, 어묵, 튀김류, 만두류, 핫도그

◎ 위반 시 조치내용

광고 매체	과태료
방송	1,000만원
라디오	300만원
인터넷	500만원

※ 근거 :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(별표 2)

◎ 광고범위

- 방송,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광고
-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범위
 - : 장난감, 게임머니, 연예인 브로마이드, 스티커, 스크래치 복권 등



미끼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

1.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선착순으로 장난감 등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 출시 기념으로 자사의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사은품(장난감 등)을 준다는 광고

2.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장난감 등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장난감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광고

3. 어린이 기호식품과 장난감을 묶음(셋트)으로 하여 판매한다는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과 장난감을 한 묶음으로 하여 판매한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 용기뚜껑 등에 장난감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제품 사진 인터넷등에 게재 광고

4.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포인트 등을 적립해 준다는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응모번호를 입력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(모바일 게임포함)이용, 경품 이벤트 응모 등을 할 수 있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(박스)안에 카드, 스티커, 그림엽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광고 등
-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(박스)안에 들어있는 카드, 스티커, 그림엽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추첨하여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 등

5. 어린이 기호식품구매 시 경품을 준다는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응모번호로 경품행사에 참여 시 100% 경품을 준다는 광고 등
-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, 당첨결과에 따라 경품을 준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의 응모번호(제품의 겉면, 내면 또는 함께 제공하는 스티커에 표시되어 있는 행사 참여번호 포함)로 경품행사 참여 시 추첨하여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에 표기된 응모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거나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

미끼상품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- 제공하는 사은품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경우(어린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은품은 제외)
예) 성인이 필요로 하는 도서, 육아용품, 주방용품, 자동차, 생활용품 등
- 제공하는 사은품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실시하는 이벤트(경품)행사 참가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(18세 이상임이 확인되어야만 이벤트 행사내용 노출)
-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식품, 자사식품의 시식권 또는 할인권을 준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사식품 구매 시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은품 또는 경품 행사 광고
-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계없는 단순히 응모번호 입력장만 있는 광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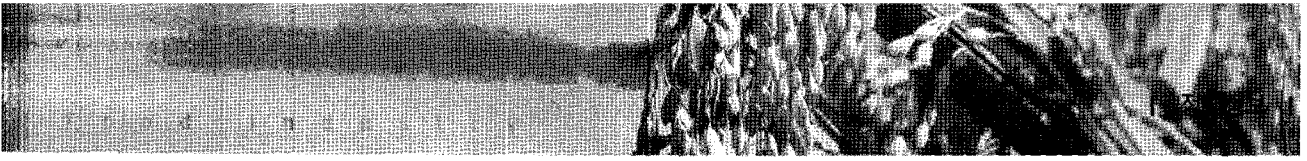
Q & A

◇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지 않는 광고 ◇

- Q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모델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하고, 투표에 참여한 응모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모델에 대한 인기투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.
- Q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영상물(예, 크리스마스 시즌 중 루돌프 사진)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린 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.
- Q**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제품 시식 느낌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경품(장난감 등)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.
- Q**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와 관계없이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품(장난감 등)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.
- Q**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 추첨하여 경품(장난감 등)을 준다는 광고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할 수 없음.
- Q**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품을 준다는 광고(18세 이상임을 입증)가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- A**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란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의 학생 및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므로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◇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 ◇

- Q** 커피와 제빵을 함께 취급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등 구입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고객에게 어린이



장난감 증정 행사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
A “커피”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“빵”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므로 구매자에게 장난감을 제공한다는 광고는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함.

Q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(장난감 등)행사에 18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자막문구를 사용하거나 설명을 한다면 경품(장난감 등)행사 광고가 가능한지?

A 방송 및 라디오의 경우 모든 연령이 시청하므로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.

◇ 기타 ◇

Q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시 경품행사(사은품 제공) 내용을 신문, 전단지 및 모바일전송을 통한 광고나 판매장소에서 알리는 광고도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
A 광고제한 대상 매체는 텔레비전, 라디오 및 인터넷에만 해당하므로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Q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의 경품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. 그럼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것인지?

A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지 사은품(경품) 제공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.

Q 어린이 기호식품의 브랜드 홈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맛 등 단순한 제품 소개도 광고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?

A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므로 광고제한대상이 아님.

Q 동 규정의 규제대상 영업자를 ‘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’로 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영업자도 해당하는지?

A 식품접객업 영업자도 판매자에 해당함.

Q 종료된 경품행사 내용이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경우도 제한대상인지?

A 이미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해당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하더라도 미끼상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광고제한 대상이 아님.

Q 어린이 기호식품 오프라인 행사 결과 경품(장난감 등) 당첨자를 온라인 행사명과 같이 발표하는 경우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?

A 이미 오프라인 행사가 종료되어 해당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경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광고제한 대상은 아님.